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26(화) 10:00

##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추 병 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40호
- 나. 제 출 자 : 엄셋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 2. 제안이유

구체적이고 세밀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교육,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항제1호~제5호)
- 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조항 신설(안 제14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11. 15. ~ 2024. 11. 21.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교육,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항제1호~제5호)
  - 여성폭력피해자의 긴급보호 및 치료와 회복 등 지원
  -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거시설 등 환경개선 및 안전용품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위탁시설 및 동반 입소가 가능한 임시숙소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의 법률 및 자활·자립 지원
-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조항 신설(안 제14조)
  - 여성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한 홍보 활동의 근거를 마련함

###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 방지 등을 위한 추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9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